

가입금액과 기간을 내 맘대로 정하는

과학기술인 **으뜸**적금 & 우대금리 (결혼·출산) 상품설명서



적금

최대 연복리 **4.75%!**
(출산 우대금리 적용시)



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"과학기술인으뜸적금"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, 「목돈급여사업규약」에 따릅니다.

과학기술인**으뜸**적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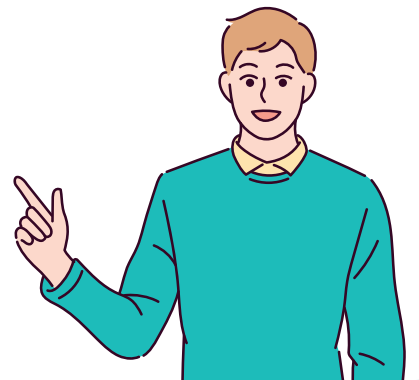
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,
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

가입자격

- ✓ 공제회 퇴직연금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
- ✓ 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
- ✓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

가입자격 직원
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연구회, 대학원대학 임직원
 - 특정연구기관 임직원
 -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,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
 -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
 -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,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
 -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
 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
 -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
 -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
 -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
 -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
 - 특화선도기업 임직원
 -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
 - 프론티어사업단, 융합사업단, 글로벌사업단 임직원
 -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(대학 산학협력단)
- *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우 회원자격 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



지급률

✓ 적용지급률

최대 연복리 4.75%
(출산 우대금리 적용시)

(연 % / 2025. 4. 7. 기준)

가입기간	1년	2년	3년	5년
과학기술인으뜸적금	4.00%			4.25%
우대금리(결혼 0.3%p)	4.30%			4.55%
우대금리(출산 0.5%p)	4.50%			4.75%

*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

가입기간

✓ 가입기간



가입일은 **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지정**

가입금액 및 한도

✓ 월납입액

최소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범위 내 본인선택 (1만원 단위)

✓ 가입한도

전 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

* 가입기간별 한도 : 1년(월 833만원), 2년(월 416만원), 3년(월 277만원), 5년(월 166만원)

* 결혼·출산 우대금리 적용 시,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월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

* 목돈급여(일시금형) 5억원 한도와는 별도 적용



가입한도 범위 내 **복수 가입 가능, 가입기간 중 증·감좌 가능**

우대조건

✓ 우대조건 간 중복 적용은 불가 (**최대 0.5%p까지 금리 우대 가능**)

✓ 우대사유별 1인 1회, 1건만 가입가능 (**만기수령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**)

- 단 유효기간 중 출산 인원에 따라서는 복수 가입 가능(다둥이 등)

✓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가입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 또는 출산한 사람

- 가입신청일 : 회원이 실제로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날

* (예시) 2025년 5월 10일에 가입신청할 경우, 2023년 5월 11일이나 그 이후에 결혼 또는 출산해야 2년 이내로 간주함

가입여부	대상기간	비고
가능	우대금리 신청일 : 2025년 5월 10일 출생신고일 : 2023년 5월 11일	2년 이내
불가능	우대금리 신청일 : 2025년 5월 10일 출생신고일 : 2023년 5월 10일	2년 초과

적용세율

✓ **일반과세 15.4%**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

✓ 비과세 자격이 되는 경우

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입가능 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)

* 단,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

가입방법

1 온라인

공제



과학기술인**으뜸**적금



가입신청안내



가입신청(회원/비회원)

* 비회원인 경우 회원자격 심사를 위해 근무처가 명시된 증빙자료 제출

2 오프라인

목돈급여(적금형) 가입신청서

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공제회 제출

✓ **제출처**

(E-mail) info@sema.or.kr (fax) 02-3469-7799

* 목돈급여(적금형) 가입신청서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, CMS출금이체 신청서 제출

* 비회원인 경우 증빙서류로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첨부파일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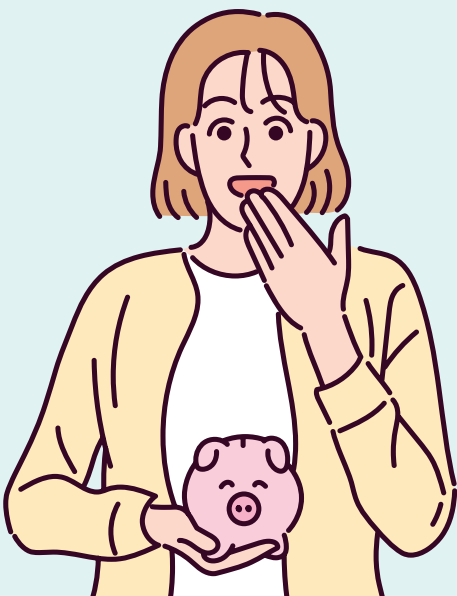
* 비회원 중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은, 상단의 제출서류 이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임을 확인가능한 근무부서가 포함된 서류 추가 제출 요망(ex. 연구인력현황, 재직증명서 등)

* 결혼 또는 출산 우대금리 적용시 혼인관계증명서(결혼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출산)를 우대사유에 맞게 첨부파일로 제출

* 증빙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건만 유효

✓ 출금일 **5영업일의 전일까지 가입신청 완료 시** 익월 1일 최초 부담금 인출

✓ 당월 접수마감일 이후 가입신청 건은 **차익월 1일에 인출**



부담금 납부

✓ **정기납부일**
매월 1일 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
✓ **부담금 납부**
가입시 지정한 **본인 계좌에서 자동출금**

- *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미출금 건에 한하여 다음 3영업일에 추가인출 시도
- * 최종 미출금 시 홈페이지 미납분 개별납부 신청을 통해 납입 가능
- * 초회미납 시 해당 신청건은 익월로 이월 (3회차 이월시 가입신청 반려)

✓ 가입 중 **연속 3달 미납 시 납입중지**

✓ 출금예정일 **5영업일의 전일까지 신청(가입, 증·감좌) 시** 익월부터 인출 적용
당월 접수마감 이후 신청 건은 차익월부터 인출 적용

✓ **다건 가입 시 인출 우선 순위**
1순위 : 연체가 있는 건 **2순위** : 가입이 오래된 건 **3순위** : 누적금액이 큰 건

미납분 개별납부

✓ **신청방법(온라인)**

- 공제 > 과학기술인으뜸적금 > 미납분 개별납부 신청 안내 > 온라인신청
- 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MY공제 > 과학기술인으뜸적금 > 신청 > 미납분 개별납부 신청

✓ **납부방법**

- 미납된 회차 중 미납분만 선택 납부
- 개별납부 신청시 발급된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 납부(분할 납부 불가)

✓ **신청불가기간**

- 정기출금 기간 5영업일 전 ~ 2차 정기출금일 다음영업일까지 신청불가
(예시) 2025년 4월 24일(5월 정기출금일 5영업일 전) ~ 5월 9일(2차 정기출금일 다음 영업일)

- 이자계산 : 입금 당일부터 가입당시 지급률로 이자 계산
- 연속 3회미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(납입중지) 대상 제외

급여지급 (만기수령)

✓ **만기지급일**
최종납입일의 **익월 1일(휴일인 경우 전영업일)**

✓ **급여지급**
가입 시 지정한 **지급계좌로 만기지급일에 지급**

- * 만기일 4영업일 전부터는 중도해지 신청 불가

✓ **재예치**

- 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(만기지급형, 이자지급형, 원리금지급형, 연금지급형)로 예치를 원할 경우 만기 재예치 가능

✓ 최종 납입일 이후 ~ 만기지급 3영업일 **오후 4시 전까지** 신청가능

- * 단, 연금지급형은 최소 3천만원부터 재예치 가능

중도해지

✓ 중도해지지급금
원금 100% + (해지일까지 발생이자 × 중도해지지급률)

✓ 중도해지지급률

~90일미만	90일~180일미만	180일~1년 미만	1년~2년 미만	2년~3년 미만
이자의 50%	이자의 60%	이자의 70%	이자의 80%	이자의 90%

✓ 중도해지 신청방법

1 온라인



* 지급희망일은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 이후 날짜로 지정 가능(신청 당일 지급 불가)

2 오프라인

목돈급여 지급신청서 ✎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공제회 제출

* 목돈급여 지급신청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

✓ 제출처

(E-mail) info@sema.or.kr (fax) 02-3469-7799

✓ 정기출금일 전 영업일부터 ~ 정기출금일 다음영업일까지 해지일 지정 불가

이자계산방법

✓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원지급률로 연복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지급

$$\sum_{h=1}^n [h\text{회차원금} \times [(1 + \text{지급률})^{\frac{\text{경과일수}}{365}} - 1]]$$

안전장치



✓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·출연금 지원·지급 가능 (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)

기타 유의사항

✓ 회원이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중도해지지급금을 유족에게 지급. 이자는 사망일+30일까지 회원지급률 적용, 그 이후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 ('24.5월 기준 2.0%)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

✓ 연속 3회 미납에 의한 자동중도해지 시에도 회원본인의 급여지급청구에 의하여 급여지급되며,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이 적용됨.

✓ 만기지급 시 수령계좌 폐쇄, 자동중도해지 후 회원의 청구지연 등 회원의 사유에 의한 급여지급지연 시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%를 일할계산

문의사항

✓ 1577-0789 (내선 3번)